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3선거구 출신 박승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급속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공중이용시설이나
공공건물과 주차장에만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상위법령인 「친환경자동차법」 과 시행령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급속충전시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조례로 인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에도
급속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되었고,
설치비용이 비싼 급속충전시설을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또한, 최근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인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속충전시설 설치 의무는 시민들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공동주택에는 급속충전시설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이에 일률적인 급속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개선하여,

공중이용시설이나 공공건물, 주차장 등 공공이 관리하는
건물에만 급속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세분화하는
본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급속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을 세분화하여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령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공공건물과 주차장을
대상에 명시함으로써,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활성화 하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